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1나72269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22. 11. 9 선고 2021나72269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524233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웅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선, 강지인

변론종결 2022. 9. 28.

판결선고 2022. 11. 9.

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. 11. 30. 선고 2021가단524233 판결

주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담양군 C 답 2,265㎡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19. 6. 24. 접수 제92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정영하, 판사 황진희, 판사 김용신